

믿을주는 소비자금융! 안심되는 소비자금융!

CLFA

한국대부금융협회

(04527)서울시 중구 소월로10, 13층(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TEL 02)3487-5800/ FAX 02)6670-9670/ www.clfa.or.kr

문서번호 : 보호센터-044

발신일자 : 2016. 11. 30.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제 목 : 중개업무 관리규정 위반 중개업체 명단 통보

1.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부금융회사는 「대부중개관리규정」 제10조 제2항 제10호에 의하여 과대·허위·과장 광고·영업행위, 대부금융회사 이외의 여신금융기관과의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맺은 중개업체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회는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대부중개인의 협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10조(계약해지)

② 대부금융회사 및 상위 대부중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모집업무 위탁관계에 있는 대부중개인과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대부중개인이 제7조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③ 협회는 전 2항의 계약이 해지된 대부중개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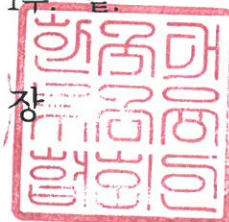
3. 이에 해당 중개업체 명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동일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해당 중개업체와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결과를 5영업일 이내 FAX(02-6670-9670)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문 의 : 소비자보호센터 김현민 과장 (02-3487-5800, 내선131).

붙 임 : 1. 중개업무 관리규정 위반 업체 및 위반 내용 1부.

2. 위탁계약 해지 결과 회신양식 1부, 끝.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수신처 : 경인파이낸스대부(주) 외 141개 신용대출 및 대출중개 회원사 대표이사 귀하

붙임1.

◆ 중개업무 관리규정 위반 업체 및 위반 내용 ◆

순번	상호	중개등록번호	위반내용	
1	N파이낸스 대부중개	2015-서울동대문 00467(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7조 제9호 및 제10호	<u>블로그</u> <u>포스트</u> 를 통한 <u>대부금융회사</u> <u>외 광고행위</u> 민원 접수

※ 블로그 광고 별지 참조

정식상담사

TALK | 2

010-7440-4536

모바일에서 클릭시 전화바로연결

· 상담사 정보

성명	임◯영
연락처	010-7440-4536
등록번호	26560◯

저속은행중앙회등록번호 26560◯ | 대출상담사 임◯영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 77-9965494 (연락처관리번호 27-9965494) | 채권수수료명칭 | 대환번호 1522-1462
수령사명 (주)로아스비즈니스 | 대표이사명 | 유영우 대표 607-55-10701 | 주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로22길 29 로아빌딩 4층

<본 포스터는 소정의 연고료를 거래공간에 게시됩니다>

붙임2.

◆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결과 회신 ◆

상 호 명	
작 성 자	
작성부서	
연 락 처	

☐ 당사는 아래업체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중개업무 관리규정 위반 중개업체

순번	업체명	등록번호	위탁계약 해지일
1	N파이낸스 대부중개	2015-서울동대문-00467(대부중개업)	

※ 해당 업체와 위탁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작성바랍니다.

2016년 2월 일

대표자 : (인)